

보상금 지급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보상대상 기간		년	월	일
				~		년	월	일
신청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	
	실거주지 주소							
	(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:)							
	※ 주민등록지와 불일치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							
	① [] 취업 여부				② [] 사업자등록 여부			
	직장명				사업장명			
	직장 위치				사업장 위치			
재직 기간		~ 년 월 일		사업 기간		~ 년 월 일		
거주 제외 기간	③ [] 현역병으로 군 복무 ([]육군, []해군, []공군, []해병, []의무경찰, []의무소방, []대체복무)					~ 년 월 일		
	④ [] 이민 등 국외체류					~ 년 월 일		
	⑤ [] 교도소 등에 수용					~ 년 월 일		
	⑥ [] 그 밖의 사유 (사유:)					~ 년 월 일		
⑦ 보상금 지급통장	은행			계좌번호				
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								
						년	월	일
신청인						(서명 또는 인)		
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						(서명 또는 인)		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		
신청인 제출서류	1.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2.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(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(이민·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4. 직장 소재지,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(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5.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(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, 주민등록말소자 초본,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,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(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만 제출합니다)					수수료 없음	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. 사업자등록증명 4.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5. 현역병(의무경찰대원,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합니다)의 복무기간 6.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					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

1. 개인정보 활용 목적

이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

2.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 요청 범위

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취업 및 재학 상태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·출입국·병무·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)을 통해 조회 또는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3.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활용한 개인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.

※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안내사항

-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.
- 보상금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는 5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신청인에게 통보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①란에는 취업하여 재직 중인 경우 직장명, 직장위치, 보상대상 기간 중 재직기간을 적습니다.
- ②란에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명, 사업장위치, 보상대상 기간 중 사업기간을 적습니다.
- ③란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한 경우 구체적으로 육군·해군·공군, 해병대, 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대체복무요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보상대상 기간 중 복무기간을 적습니다.
- ④란에는 이민 등 국외체류한 경우 보상대상 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을 모두 적습니다.
- ⑤란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보상대상 기간 중 수용기간을 적습니다.
- ⑥란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고 보상대상 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적습니다.
- ⑦란에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